

<범위>

강재 엘리베이터 지하피트 구조물을 설치 후 거푸집 설치 및 해체 공정과 마감 방수공사가 없으며, 구조물 내부판재에 승강로 설비를 용접 고정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구조물 외측면에 전단차수키와 부틸씰지수재를 적용하고 에폭시계열의 도료에 규산알루미늄 입자를 첨가한 후처리 도료(E Mastic WK8028)를 도장하여 지하수압에 의한 누수를 방지하는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74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주)삼성씨엔엠(윤상철) ② 백양엔지니어링(주)(최동하)

나. 전화번호 : ① 070-4667-7051 ② 02-409-7373

2. 명칭 : 표면처리 부산물의 분리 및 집진이 가능한 멀티블라스트 재생장치를 적용하여 바탕처리 후 실라노 복합재와 불소폴리머 코팅재를 도장하는 강구조물 보호 공법(MBP System)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목구조물 보수보강(포장 보수제외) / 기타 구조물 보수보강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표면처리 시 발생하는 부산물을 회수 분리하고 비산분진 집진장치 및 연마재 재사용이 가능한 멀티블리스트 재생 시스템을 적용하여 바탕처리 후 실라노세라믹 복합도장재와 불소 모노머 아크릴 폴리올 합성수지 코팅재를 도장하는 강구조물 보호 공법이다. 특히 멀티블라스트 재생장치는 연마재 회수분리 및 이송, 페인트조각 분리, 재생호퍼 분사, 집진설비, 수집처리 시스템

구성으로 기존에 열화된 도장면과 볼트부, 연결관 등 협소구간까지 도막을 제거하고 연마재 및 페인트 부산물의 분리, 집진, 재생을 실현하였으며 실라노세라믹 복합도장재와 불소모노머 아크릴 폴리올 합성수지 코팅재를 도장함으로 안정성, 내후성, 환경성을 확보한 기술이다

<범위>

신청기술은 표면처리 부산물의 분리 및 집진으로 연마재의 재사용이 가능한 멀티블라스트 재생장치를 적용하여 바탕처리 후 실라노세라믹 복합도장재와 불소모노머 아크릴 폴리올 합성수지 코팅재를 도장하는 강구조물 보호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20-221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새만금개발청이 사업시행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및 대체 지정, 이와 연계된 토지 매도명령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까지 확대하여 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이에 따른 연관 기업의 유치를 촉진하는 등의 내용으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6897호, 2020. 1. 29. 공포, 7. 30. 시행)됨에 따라,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대체사업시행자의 지정을 한 경우 사업의 명칭, 사업시행자의 성명 등을 고시(안 제9조의2)
 나.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 및 수의계약 대상인 연구기관의 종류를 규정(안 제32조제2항 신설, 안 제4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